성주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제정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시행과 관련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가. 편의시설이 완공되기 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나. 건축허가 이전의 설계도면과 사용승인전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를 사전점검토록 하여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장애인 위주 시설설치가 가능하도록 배려(안 제5조)

다. 사전검사는 관계공무원 포함 5명 이내로 검사반을 편성하고, 검사요원 위촉은 장애인 1/5이상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안 제7조, 제8조)

라. 사전점검결과를 적극 반영토록 하는 책무를 규정(안 제13조)

4. 관련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

□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시행과 관련하여 그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로써,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